

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(게스트하우스)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15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8. .
제출자 관광진흥과장

1. 제안이유

-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거점센터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거점센터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6,300천원 반영(비용추계서 별첨)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4. 20. ~ 5. 10. 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
 - 나) 경기도 : DMZ정책과

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(게스트하우스)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거점센터(게스트하우스)”란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.
2. “이용료”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3. “관리자”란 거점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(이하 “위탁등”이라 한다)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
4. “이용자”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위치) 거점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250번길 104 일원으로 한다.

제4조(관리 및 운영) ①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,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등을 할 수 있다.
② 수탁자는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이용시간)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

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며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
2. 시설의 개·보수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이용료 등) ① 거점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,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,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관리자는 거점센터 이용을 위해 인터넷,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이용료 반환)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관광진흥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관광진흥과장 이 금 미
	팀 장 직위·성명	관광시설팀장 백 만 석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주사 백 만 석(☎4023)

[별표 1]

이용료(제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호 수	기준인원	평일	주말· 공휴일	비 고
객실-1	1	4	60,000	80,000	침대 4 화장실
객실-2	1	4	60,000	80,000	침대 4 화장실
객실-3	1	1	15,000	20,000	침대 1 화장실
객실-4	1	1	15,000	20,000	침대 1 화장실

※ 이용시간 및 이용료 부과 기준

1) 주말·공휴일은 금요일과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.

※ 공휴일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
2) 기준인원 1박 기준이며, 이용 시간은 이용 당일 15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로 한다.

3) 입실 완료 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실 시에는 이용 당일 15:00부터 다음 날 11:00까지 이용한 것으로 본다.

4)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,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 (최대 2명까지 추가 가능)

5) 객실-1과 객실-2의 경우 기준인원 미달 시에도 이용료는 같다.

6) 만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

[별표 2]

이용료 반환기준(제7조 관련)

구 분	반환기준		비 고
1. 이용을 취소한 경우	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	받은 이용료 전액	○ 반환에 따른 이체수수료는 반환신청자 부담
	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	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	
	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	받은 이용료의 70퍼센트	
	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	받은 이용료의 50퍼센트	
	이용 당일 15시 전 취소	받은 이용료의 30퍼센트	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	받은 이용료 전액		
3. 거점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	받은 이용료 전액		

※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·배상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

[시행 2021. 7. 2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8호, 2021. 7. 2., 일부개정]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대상 범위, 기간, 위탁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,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
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.

⑦ 시장은 영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을 정하여 관리 위탁 수행능력, 사업 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조(관리 및 운영)
-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

다.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(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)

-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계
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운영 지원금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2년 1회 추경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기획담당관과 협의필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국 관광진흥과 과장 이금미 팀장 백만석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시 비	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세 출	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시 비	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재원 조달	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	지방세수입	6,300	8,400	8,500	8,600	8,700	40,5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